## 0. 24시간, 연간 기준의 농도가 다른 이유는?

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장기 노출로 인한 건강악화가 입증되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연평균 기준이 생겼습니다.

연평균 농도가 낮더라도 미세먼지 농도 변화가 심한 지역에서 순간적인 고농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4 시간 평균 기준 또한 설정하였습니다.

## 5. 국내·외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

실내공기 오염물질로는 미세먼지(PM10, PM2.5)를 포함하여 폼알데하이드, 곰팡이, 휘발성유기화합물, 일산화탄소, 라돈 등이 있습니다. 이 중 PM10과 PM2.5는 주로 주방 내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, 흡연,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활동, 교실 외부 공기의 내부 유입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.

우리나라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각 부처(교육부, 환경부, 고용노동부)에서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학교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은 교육부 「학교보건법」에서 규정하고 있으며, 교실 등에 대해 PM10은 75  $\mu$ g/m³, PM2.5는 35 $\mu$ g/m³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

## [표 4] 국내 각 관련법령에 따른 실내 미세먼지 기준

항목	학교보건법 (교육부)		실내공기질관리법 (환경부)			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(고용노동부)
	교실 등	체육관 및 강당	지하역사 등	어린이집, 의료기관	실내주차장	사무실
PM10 (µg/m³)	75	150	100	75	200	100
PM2.5 (μg/m³)	35	-	50	35	-	50

자료: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법령에 대한 저자 편집